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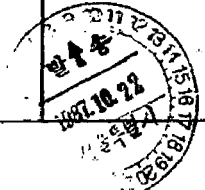



|   |  |   |  |  |
|---|--|---|--|--|
| 분류기호<br>문서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도시30310-328  | <b>기안용지</b><br>(전화: 731-6341)   |  | 시행상<br>특별취급  |
| 보존기간  | 영구·준영구.<br>10.5.3.1.   | 시 장   |  |  |
| 수신처<br>보존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<i>1987.10.22</i>   |  |  |
| 시행일자  | '87.10   | <i>1987.10.22</i>   |  |  |
| 보조<br>기관  | 도시계획국장 전결<br>도시계획과장 <i>키오/22</i><br>총합계획계장 <i>박</i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협조<br>기관  | 청주광역시 행정과장 <i>김</i><br>법무담당관 <i>김</i><br>지역계획계장 <i>김</i> | 문서통제<br> |
| 기안책임자   | 강창구  |   |  | 발송인  |
| 경유<br>수신<br>참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각안참조   |  |  |          |
| 제 목   | 도시계획사업(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) 결정   |   |  |  |
| 제 1 안   |  |   |  |  |
| 수 신 :   | 내부결재   |   |  |  |
| 제 목 :   | 같은건  |   |  |  |
| 1. 관악구 신림동 산133-8의 2필지상에 도시계획사업(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)      |  |   |  |  |
| 을 결정코자 도시계획법 제16조의 2 제2항에 의거 공람공고 및 주민의견 청취를 거쳐   |  |   |  |  |
| 우천시 '87.10.5차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('87.10.16)되어 심의 가결 되었기에 |  |   |  |  |
| 2. 도시계획법 제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권한에 의거 다음과 같이          |  |   |  |  |
| 결정시행코자 합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|  |  |
| 가. 도시계획사업 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|  |  |

1505-25(2-1) 11(1)장  
85. 9. 9. 승인

0471

190mm×268mm 인쇄용지 2급 60g/㎡  
가 40-41 1987. 4. 17.

| 구분 | 명칭                       | 위치                   | 규모(m <sup>2</sup> )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신설 | 도시계획사업(일단의주택<br>지조성사업)결정 | 관악구 신림동133-8외<br>2필지 | 14,904  | 지적공부상면적<br>14,928m <sup>2</sup> 이나<br>실측면적 14,904m <sup>2</sup> |
| "  | 도로                       | "                    | B=4-6m<br>L=173.5m<br>(1060.7m <sup>2</sup> ) |   |
| "  | 시설 녹지                    | "                    | 400   |   |
| "  | 사회복지시설 및 기타              | "                    | 330   | 노인정, 어린이놀이터   |
| "  | 공공공지                     | "                    | 72  | 적판장   |

나. 도로조서

| 구분 | 등급 | 류별 | 번호 | 폭원(m) | 연장(m) | 시점        | 종점         | 비고 |
|----|----|----|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|
| 신설 | 소로 | 3  | 1  | 6     | 121   | 신림동632-4  | 신림동632-1   |    |
| "  | "  | "  | 2  | 6     | 26    | 신림동629-53 | 신림동 632-1  |    |
| "  | "  | 4  | 1  | 4     | 19    | 신림동633-25 | 신림동 산133-8 |    |
| "  | "  | 4  | 2  | "     | 7.5   | 신림동646-77 | 신림동 산133-8 |    |

끝.

제 2 안

고 시 안

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

|       |       |       |
|-------|-------|-------|
| 제 2 안 | 제 2 안 | 제 2 안 |
| 30    | 0     | 09    |

도시계획사업(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)결정 고시



22

1. 도시계획사업(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)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

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결정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.

2.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및 관악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 토지소유자

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
1987. 10

서울특별시

가. 결정조서 : 제1안 가, 나항 이기시행

나. 도 면 : 별첨 (생략)

끝.

제 3 안

수 신 : 건설부장관

참 조 : 도시계획과장

제 목 : 같은건

1. 우리시 도시계획사업(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)결정을 별첨고시문 사본 및 도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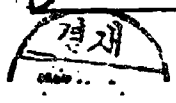
표사와 같이 결정고시하였기 보고합니다.

첨부 : 고시문사본 및 도면1부. 끝.

제 4 안

수 신 : 관악구청장

|  |
|--|
| 참 조 : 도시정비과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 목 : 도시계획사업(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) 결정통보                 |
| 1. 귀구관내 신림동 산133-8의 2필지상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(일단의 주택지   |
| 조성사업) 결정을 별첨 고시문사본 및 도면과 같이 통보하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|
| 에게 보이는등 후속조치를 취하기 바라며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. 도시계획법 제13조에 의한 지적고시는 정확한 지적공부(지적도, 토지대장)    |
| 등을 대조확인하여 시행할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첨부 : 고시문사본 및 도면1부. 끝.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 5 안  |
| <del>도시정비과 836</del>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수 신 : 수신처 참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발 신 : 과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 목 : 같은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. 관악구 신림동 산133-8의 2필지상에 대한 도시계획사업(일단의 주택지     |
| 조성사업)결정을 별첨고시문 사본 및 도면과 같이 결정고시하였기 통보하오니 관련업무에 |
| 참고하기 바랍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첨부 : 고시문 사본 및 도면1부. 끝.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수신처 : 청소과, 시설계획과, 도로과, 사치과, 공위과, 녹지과.          |
| 제 6 안  |
| 수 신 : 총무처장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

제 목 : 관보게재 의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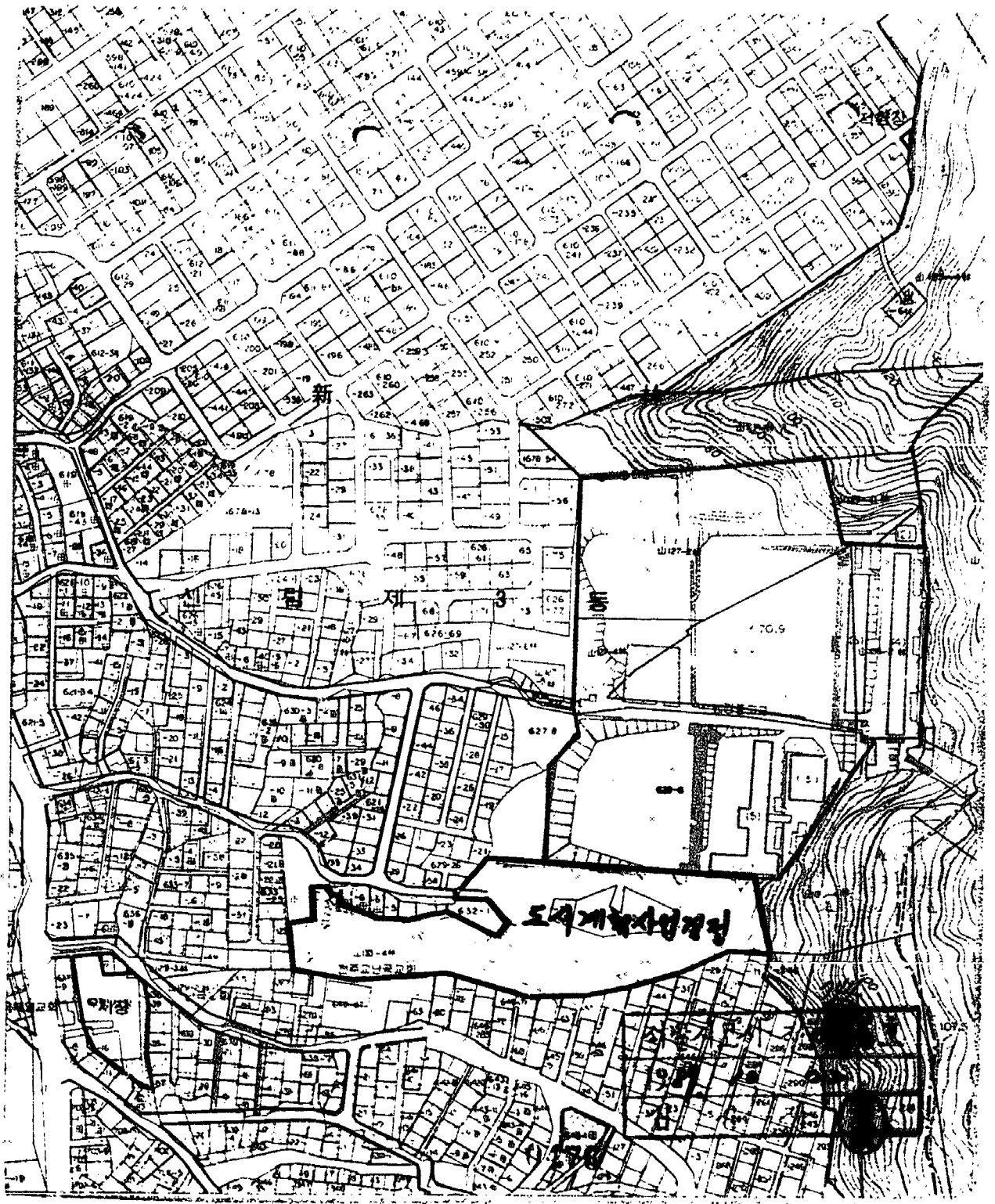
1. 다음과 같이 관보게재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비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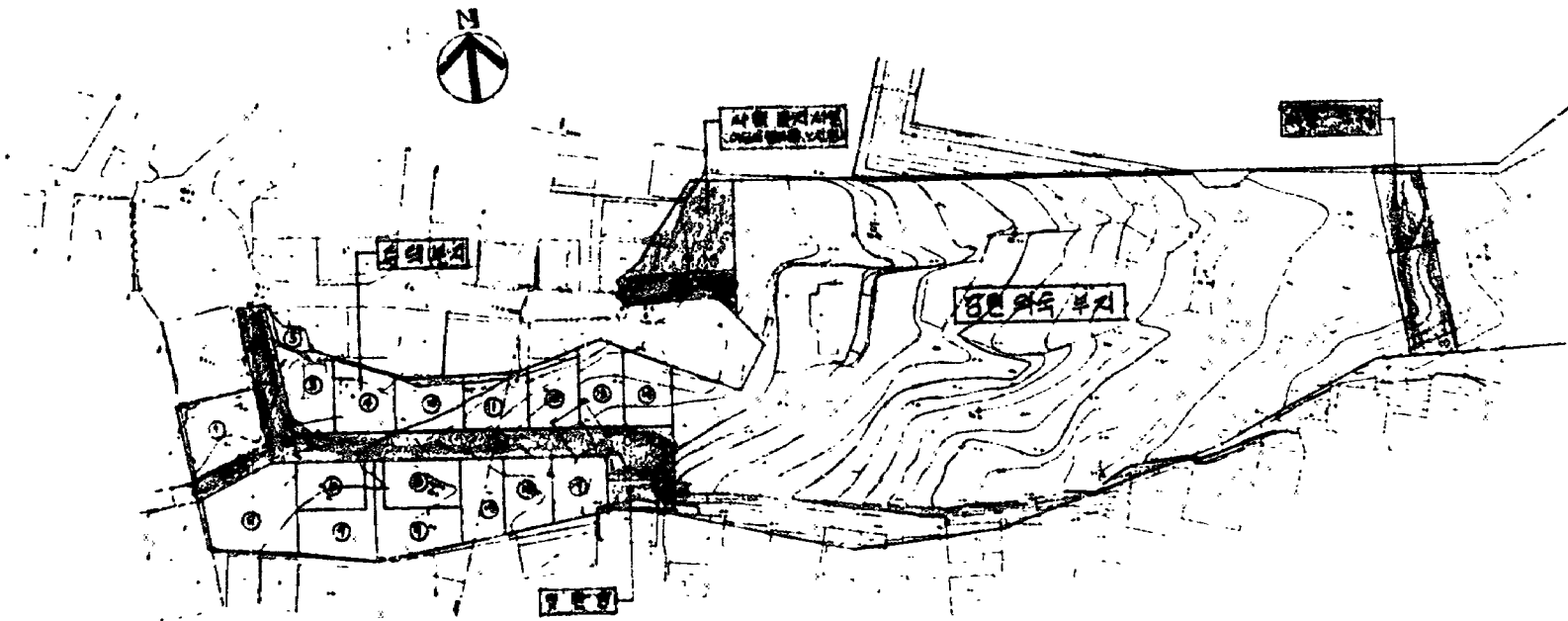
가. 관보게재 구분 : 고 시

나. 게재건명 : 도시계획사업(임단의 주택지조성사업)결정

다. 법적근거 : 도시계획법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

첨부 : 고시문 사본 2부.      끝





토지 이용 계획도  
1:500

| 토지 이용 계획 |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구        | 면적 (㎡)   | 비율 (%) | 비고                   |
| 총        | 4,928    | 100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역        | 13,088.0 | 87%    | 역역부지 포함              |
| 정역       | 1,862.0  | 12%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1,000.0  |        | (W x L)              |
|          | 793.1    |        | b x 121              |
|          | 76.0     |        | 4 x 19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61.0     |        | b x 26               |
| 정역       | 30.0     |        | 4 x 28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72.0     | 2%     | 10% x 40% (17,928.0) |

서울시 | 기 ( ) 호  
1989. 10. 22  
집 사 ( )

현황사진